새로운 도약, 구민과 함께하는 서구의회

2026. 9. 22.

심 사 결 과 보 고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비고
4600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4600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22.

행정자치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8월 27일, 서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심사 일자: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심사.의결(2026. 9. 1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평촌일반산업단지 1단계 준공 구역 내 일부 토지가 매노동, 평촌동, 용촌동에 걸쳐 있어 향후 입주기업의 주소 사용, 공부관리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행정상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매노동, 용촌동 일부를 평촌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 경계를 정비하고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매노동 365-1번지 등 총 206필지 114,137㎡를 평촌동에 편입함(안 별표).
2) 용촌동 274-4번지 등 총 39필지 17,528㎡를 평촌동에 편입함(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옥주)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평촌일반산업단지 1단계 준공 구역 내 일부 토지가 매노동, 평촌동, 용촌동에 걸쳐 있어 법정동 경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매노동, 용촌동 일부를 평촌동으로 편입하여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의 행정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6. 소 수 의 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600

제출연월일 : 2026. 8. 27.
제 출 자 : 서구청장

1. 제안이유

평촌일반산업단지 1단계 준공 구역 내 일부 토지가 매노동, 평촌동, 용촌동에 걸쳐 있어 향후 입주기업의 주소 사용, 공부관리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행정상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매노동, 용촌동 일부를 평촌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 경계를 정비하고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노동 365-1번지 등 총 206필지 114,137㎡를 평촌동에 편입함(안 별표).

나. 용촌동 274-4번지 등 총 39필지 17,528㎡를 평촌동에 편입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마.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부패요소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 2026. 7. 22. ~ 8. 11. / 제출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매노동란, 평촌동란, 용촌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명칭	관 할 구 역
매노동	매노동(365의1, 366, 366의1, 366의2, 388의2, 388의3, 389의2, 389의4, 389의5, 390의2, 391의2, 392의4, 393의2, 394의6, 395의1, 395의2, 396의5, 396의7부터 396의10까지, 397, 398의2, 399의1, 399의4부터 399의7까지, 400의1, 401의3, 401의4, 402의2, 403의4, 404의6, 404의7, 405의1, 412의2, 510의1, 511, 512의3부터 512의5까지, 513의7, 513의8, 526의2부터 526의5까지, 527의1, 528의1, 532의1, 534의4, 534의5, 541의4, 541의5, 541의8부터 541의11까지, 543의3부터 543의10까지, 544의1, 544의5, 544의6, 545의3, 548의3, 549의3, 549의5, 550의4, 550의6, 551의2, 552의1, 553의4, 554, 554의2, 555의1, 556, 557의1, 558의3, 558의4, 559의1부터 559의5까지, 560의1부터 560의6까지, 561의1부터 561의3까지, 562, 562의1, 562의2, 563, 563의1, 564, 564의1부터 564의3까지, 565, 566, 566의1, 566의2, 567, 568의1, 568의2, 569, 570, 570의1부터 570의4까지, 570의6, 570의7, 571의1부터 571의7까지, 572의1, 572의4, 572의6, 572의7, 573의1, 574의1, 575의6, 576의4, 576의5, 585의6, 622의17, 622의19, 622의20, 622의24부터 622의26까지, 622의36부터 622의39까지, 624의3, 624의5, 625의1, 625의2, 628, 628의1부터 628의4까지, 628의6부터 628의8까지, 628의15부터 628의18까지, 628의27부터 628의37까지, 640의1, 640의2, 641의1, 641의2, 642의2, 642의3, 666의1, 666의2, 666의4, 666의8부터 666의10까지, 666의18, 666의20부터 666의23까지, 666의25, 667의1, 677의1부터 677의3까지, 산43의11부터 산43의13까지, 산44의5, 산45의1, 산45의2번지는 평촌동 편입으로 제외) 일원
평촌동	평촌동 일원과 종전의 매노동 중 365의1, 366, 366의1, 366의2, 388의2, 388의3, 389의2, 389의4, 389의5, 390의2, 391의2, 392의4, 393의2, 394의6, 395의1, 395의2, 396의5, 396의7부터 396의10까지, 397, 398의2, 399의1, 399의4부터 399의7까지, 400의1, 401의3, 401의4, 402의2, 403의4, 404의6, 404의7, 405의1, 412의2, 510의1, 511, 512의3부터 512의5까지, 513의7, 513의8, 526의2부터 526의5까지, 527의1, 528의1, 532의1, 534의4, 534의5, 541의4, 541의5, 541의8부터 541의11까지, 543의3부터 543의10까지, 544의1, 544의5, 544의6, 545의3, 548의3, 549의3, 549의5, 550의4, 550의6, 551의2, 552의1, 553의4, 554, 554의2, 555의1, 556, 557의1, 558의3, 558의4, 559의1부터 559의5까지, 560의1부터 560의6까지, 561의1부터 561의3까지, 562, 562의1, 562의2, 563, 563의1, 564, 564의1부터 564의3까지, 565, 566, 566의1, 566의2, 567, 568의1, 568의2, 569, 570, 570의1부터 570의4까지, 570의6, 570의7, 571의1부터 571의7까지, 572의1, 572의4, 572의6, 572의7, 573의1, 574의1, 575의6, 576의4, 576의5, 585의6, 622의17, 622의19, 622의20, 622의24부터 622의26까지, 622의36부터 622의39까지, 624의3, 624의5, 625의1, 625의2, 628, 628의1부터 628의4까지, 628의6부터 628의8까지, 628의15부터 628의18까지, 628의27부터 628의37까지, 640의1, 640의2, 641의1, 641의2, 642의2, 642의3, 666의1, 666의2, 666의4, 666의8부터 666의10까지, 666의18, 666의20부터 666의23까지, 666의25, 667의1,

	677의1부터 677의3까지, 산43의11부터 산43의13까지, 산44의5, 산45의1, 산45의2번지, 종전의 용촌동 중 274의4, 274의5, 274의7, 275의9부터 275의12까지, 276의5, 276의6, 277의6, 277의7, 279의5, 279의6, 280의6부터 280의10까지, 292의1부터 292의3까지, 293, 294, 295, 295의2, 298, 503의11부터 503의15까지, 512의1, 512의2, 554의5, 556의3부터 556의5까지, 560의3, 560의4번지 편입
용촌동	용촌동(274의4, 274의5, 274의7, 275의9부터 275의12까지, 276의5, 276의6, 277의6, 277의7, 279의5, 279의6, 280의6부터 280의10까지, 292의1부터 292의3까지, 293, 294, 295, 295의2, 298, 503의11부터 503의15까지, 512의1, 512의2, 554의5, 556의3부터 556의5까지, 560의3, 560의4번지는 평촌동 편입으로 제외)일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 관련)**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 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매노동	매노동(592의38, 592의39번지 제외) 일원

명 칭	관 할 구 역
매노동	매노동(365의1, 366, 366의1, 366의2, 388의2, 388의3, 389의2, 389의4, 389의5, 390의2, 391의2, 392의4, 393의2, 394의6, 395의1, 395의2, 396의5, 396의7부터 396의10까지, 397, 398의2, 399의1, 399의4부터 399의7까지, 400의1, 401의3, 401의4, 402의2, 403의4, 404의6, 404의7, 405의1, 412의2, 510의1, 511, 512의3부터 512의5까지, 513의7, 513의8, 526의2부터 526의5까지, 527의1, 528의1, 532의1, 534의4, 534의5, 541의4, 541의5, 541의8부터 541의11까지, 543의3부터 543의10까지, 544의1, 544의5, 544의6, 545의3, 548의3, 549의3, 549의5, 550의4, 550의6, 551의2, 552의1, 553의4, 554, 554의2, 555의1, 556, 557의1, 558의3, 558의4, 559의1부터 559의5까지, 560의1부터 560의6까지, 561의1부터 561의3까지, 562, 562의1, 562의2, 563, 563의1, 564, 564의1부터 564의3까지, 565, 566, 566의1, 566의2, 567, 568의1, 568의2, 569, 570, 570의1부터 570의4까지, 570의6, 570의7, 571의1부터 571의7까지, 572의1, 572의4, 572의6, 572의7, 573의1, 574의1, 575의6, 576의4, 576의5, 585의6, 622의17, 622의19, 622의20, 622의24부터 622의26까지, 622의36부터 622의39까지, 624의3, 624의5, 625의1, 625의2, 628, 628의1부터 628의4까지, 628의6부터 628의8까지, 628의15부터 628의18까지, 628의27부터 628의37까지, 640의1, 640의2, 641의1, 641의2, 642의2, 642의3, 666의1, 666의2, 666의4, 666의8부터 666의10까지, 666의18, 666의20부터 666의23까지, 666의25, 667의1, 677의1부터 677의3까지, 산43의11부터 산43의13까지, 산44의5, 산45의1, 산45의2번지는 평촌동 편입으로 제외) 일원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 관련)
<table>
<tr><th>명 칭</th><th>관 할 구 역</th></tr>
<tr><td>평촌동</td><td>평촌동 일원</td></tr>
</table></td><td>[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 관련)
<table>
<tr><th>명 칭</th><th>관 할 구 역</th></tr>
<tr><td>평촌동</td><td>평촌동 일원과 종전의 매노동 중 365의1, 366, 366의1, 366의2, 388의2, 388의3, 389의2, 389의4, 389의5, 390의2, 391의2, 392의4, 393의2, 394의6, 395의1, 395의2, 396의5, 396의7부터 396의10까지, 397, 398의2, 399의1, 399의4부터 399의7까지, 400의1, 401의3, 401의4, 402의2, 403의4, 404의6, 404의7, 405의1, 412의2, 510의1, 511, 512의3부터 512의5까지, 513의7, 513의8, 526의2부터 526의5까지, 527의1, 528의1, 532의1, 534의4, 534의5, 541의4, 541의5, 541의8부터 541의11까지, 543의3부터 543의10까지, 544의1, 544의5, 544의6, 545의3, 548의3, 549의3, 549의5, 550의4, 550의6, 551의2, 552의1, 553의4, 554, 554의2, 555의1, 556, 557의1, 558의3, 558의4, 559의1부터 559의5까지, 560의1부터 560의6까지, 561의1부터 561의3까지, 562, 562의1, 562의2, 563, 563의1, 564, 564의1부터 564의3까지, 565, 566, 566의1, 566의2, 567, 568의1, 568의2, 569, 570, 570의1부터 570의4까지, 570의6, 570의7, 571의1부터 571의7까지, 572의1, 572의4, 572의6, 572의7, 573의1, 574의1, 575의6, 576의4, 576의5, 585의6, 622의17, 622의19, 622의20, 622의24부터 622의26까지, 622의36부터 622의39까지, 624의3, 624의5, 625의1, 625의2, 628, 628의1부터 628의4까지, 628의6부터 628의8까지, 628의15부터 628의18까지, 628의27부터 628의37까지, 640의1, 640의2, 641의1, 641의2, 642의2, 642의3, 666의1, 666의2, 666의4, 666의8부터 666의10까지, 666의18, 666의20부터 666의23까지, 666의25, 667의1, 677의1부터 677의3까지, 산43의11부터 산43의13까지, 산44의5, 산45의1, 산45의2번지, 종전의 용촌동 중 274의4, 274의5, 274의7, 275의9부터 275의12까지, 276의5, 276의6, 277의6, 277의7, 279의5, 279의6, 280의6부터 280의10까지, 292의1부터 292의3까지, 293, 294, 295, 295의2, 298, 503의11부터 503의15까지, 512의1, 512의2, 554의5, 556의3부터 556의5까지, 560의3, 560의4번지 편입</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 관련)
<table><tr><th>명 칭</th><th>관 할 구 역</th></tr><tr><td>용촌동</td><td>용촌동 일원</td></tr></table></td><td>[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 관련)
<table><tr><th>명 칭</th><th>관 할 구 역</th></tr><tr><td>용촌동</td><td>용촌동(274의4, 274의5, 274의7, 275의9부터 275의12까지, 276의5, 276의6, 277의6, 277의7, 279의5, 279의6, 280의6부터 280의10까지, 292의1부터 292의3까지, 293, 294, 295, 295의2, 298, 503의11부터 503의15까지, 512의1, 512의2, 554의5, 556의3부터 556의5까지, 560의3, 560의4번지는 평촌동 편입으로 제외)일원</td></tr></table></td></tr>
</table>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